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6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김위상・임이자・서범수

김승수 · 주호영 · 박성민

박성훈 · 강승규 · 김소희

김성원 • 우재준 • 곽규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상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기상현상인 폭염·한파·황사 등의 기상여건과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 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기상법」 제13조제1항에서		
	<u>정한 기상현상인 폭염·한</u>		
	<u>파·황사 등의 기상여건과</u>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u>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PM1</u>		
	<u>0)·초미세먼지(PM2.5) 등의</u>		
	대기오염 상황에서 장시간 옥		
	외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		
	<u>강장해</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